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5
----------	-----

2023. 6. 23.(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3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절수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충청도민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한 절수와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 2001년 이후 환경부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이에 대한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규정하여 절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을 지원 촉진 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	-	22.12.30	20.11.9	23.2.23	-	23.4.6	17.9.29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0.7.15	19.1.4	17.9.20	20.5.29	20.8.6	-	17.8.3	17.12.29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도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법을 근거로 공중화장실, 숙박·목욕장·체육시설 등에서 절수설비(기기) 등 설치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

참 고

- **절수설비** :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 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도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6. 2. ~ 6.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행정·재정적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도민의 수돗물 절약과 절수 습관을 생활화하고 더 나아가 수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제정 이후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 역할 및 수도사업자의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5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절수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3. 6. 2. ~ 6. 8.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30. (생략)

31. “절수설비” (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생략)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④ (생략)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 지원 및 사업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 물 절약 문화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 조례안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 지원, 물 절약 문화 관련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및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70,000만원(14,000만원/년)

-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 13,000만원/년
 - 절수설비 설치 지원 : 13,000만원 × 1식 = 13,000만원
 - ※ 청주시 : 2,000만원, 충주시·제천시 : 1,500만원, 보은군 등 9개군 : 1,000만원
 - 산출근거(절수형 샤워꼭지 기준)

- 청주시 : 2만원/개 × 1,000개 = 2,000만원
- 충주시·제천시 : 2만원/개 × 750개 = 1,500만원
- 보은군 등 9개군 : 2만원/개 × 500개 = 1,000만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도 30%, 시군 70%)**

- 물 절약 문화 확산사업 추진 : 1,000만원/년
 - 물 절약 문화 교육 실시 : 800만원×1회 = 800만원
 - 물 절약 문화 홍보(홍보물 제작·배포) : 200만원×1식 = 200만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절수설비 설치지원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물절약문화 확산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자체 수입	소 계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지방세	4,900	4,900	4,900	4,900	4,900	24,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시·군비		9,100	9,100	9,100	9,100	9,100	45,5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